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01호)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의원 등 15인
2. 발 의 일 : 2024. 11. 12.
3. 회 부 일 : 2024. 1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8조제7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¹⁾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지원기금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 조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7. (생략) <u><신설></u> 8. (생략)	제8조(기금의 용도) -----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지원기금 사업의 지원</u> 8. (현행과 같음)

- 이 개정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1)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환경,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5.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填)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500호)은 접경지역의 전기·통신·가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신설하면서, 동 기금의 재원을 현행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내용 〉

제27조의2(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 발전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5.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기금의 운용수익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어업·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개선 2. 전기·통신·가스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 3.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의 개발 5.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 6. 교육·의료·후생 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7. 민방위 정보, 대피시설 등 주민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이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

□ 접경지역²⁾은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수도권정비계획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하며, 10개 시·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민통선 인근 5개 시·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을 포함하여 이르는 용어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

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중첩적 규제로 타 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생활기반시설 등이 원활히 개선되지 아니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205500호)에 따른 전기·통신·가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 등 접경지역지원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중 하나를 남북협력기금으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우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³⁾·운영하는 자금으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이라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임.⁴⁾

그런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따라 설치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이 수행하려는 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이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남북협력기금의 설치목

3)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4) 「남북협력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어 이들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접경지역 주민이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⁵⁾ 및 현행법 제8조제2호·제3호·제6호⁶⁾에 근거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금의 신설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간접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임.

〈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사례 〉

(단위: 백만원)

연도	지역	사업명	금액
2019	고성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DMZ 평화의길)	1,604
	파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DMZ 평화의길)	1,156.5
	철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DMZ 평화의길)	429.5
2020	철원	화살머리고지기념관 건립(현장기념관)	2,000
2021	고성	고성 DMZ 평화의길(A코스) 개보수	720
	철원	철원 DMZ 평화의길 비마교 복구	2,300
2022	강원도	DMZ 평화의길 인프라구축	5,480
합계			13,690

자료: 통일부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동 검토보고서 2쪽 각주[「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참조

- 동 개정안에 대하여 통일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용도 중 현행법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제외하고는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경우도 현행법으로 지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남북협력기금과 같은 사업성 기금을 다른 사업성 기금에 예탁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임.
- 또한, 기획재정부는 현행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 목적이 상이하고 남북협력기금 및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용도 또한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68